

# 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 다자녀가구 구비서류 안내

## ■ 구비서류 [서류제출 기간 : 2022.03.05.(토) ~ 2022.03.11.(금) / 장소 : 당사 견본주택]

구분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	인감증명서	본인	·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(대리 발급분 불가 / 용도 : 주택공급 신청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
	인감도장	본인	·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
	주민등록표 등본(상세)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 초본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·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을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추가 서류 (해당자)	주민등록표 등본(상세)	배우자 자녀	·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·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주민등록표 초본(상세)	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(상기 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 또는 자녀	·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(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로 인정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 직계비속	·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· 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되고, 한부모가족으로 세대 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가능해야 함,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-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
	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[당사 양식] 견본주택에 비치
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기간 명시)
	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무주택 소명 서류	해당자
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해당자	·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인감증명서	청약자	·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(대리 발급분 불가 / 용도 : 서류제출 위임용)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인감도장	청약자	·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위임장	청약자	· [당사 양식] 견본주택에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신분증, 인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2.10) 이후 발행분**에 한합니다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**「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」**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당한 당첨자(적격 여부)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**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**

※ 상기 내용은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등 관련 법규 및 '국토교통부지침'에 근거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법규 및 '국토교통부지침'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